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9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4일
발 의 자 : 김광수, 김제리, 김기덕, 김정환,
유정희, 송명화, 김경영, 송정빈,
김생환, 이광성, 유 용, 이광호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사용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차별적 용어로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p> <p>2.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 -----.</p> <p>1.----- <u>저출생</u> ----- -----</p> <p>2. (현행과 같음)</p>